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8 선고 2020가단53111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24 선고 2021나6038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8 선고 2020가단5311124 판결

#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(담당변호사 김선인)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25.

판 결 선 고 2021. 9. 8.

#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)의 1/6 지분에 관하여 2017. 1. 12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3,793,278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,793,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 사실

-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2016. 5. 20. ‘C은 원고에게 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. 1. 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1354호)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6. 12. 6. 확정되었다.
  -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이던 D는 2017. 1. 12. 사망하였다.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C 등 6명이 있다.
  -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. 6. 1. 피고 앞으로 ‘2017. 1. 1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  -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69,600,000원,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인 2013. 8. 7.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 피고는 2017. 6. 13.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8,040,329원을 변제하였고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무렵 말소되었다.1) ○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-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3호증, 을 제1~1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원고의 주장

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.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,793,278원[= 82,759,671원(= 이 사건 아파트 가액

140,800,000원 -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8,040,329원) × 1/6]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판단

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○ D는 2013. 8. 7.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8,000,000원을 대출받았는데, 위 대출금 중 31,453,907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, 20,000,000원은 C의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송금되었다. 그리고 위 기존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C이었다.

○ D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무렵인 2000. 7.경 피고는 D의 계좌로 합계 25,000,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.

이에 따르면,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원고 주장대로 140,800,000원으로 보더라도, C의 상속지분 가액은 23,466,666원(= 140,800,000원 × 1/6) 정도인데, C은 이미 이를 훨씬 넘는 51,453,907원 상당을 받은 셈이 된다.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D에게 25,000,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,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### 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강화석

별지

1) 위 2013. 8. 7.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,000,000원,

근저당권자 F조합인 2005. 8. 12.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인 2017. 6. 16. 말소되었다. 다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오래 전에 변제되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